

	규정	문서번호	TWP-A311
		제정일자	2003. 07. 01.
국가(기술)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	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1/4

## 목 차

부칙

별표

작성부서	교무처	제정일자	2003. 07. 01.
------	-----	------	---------------

구 분	작 성	검 토					승 인
직 책	담 당	교학부총장	학생처장	산학협력처장	기획처장	사무처장	총 장
서 명							
일 자							



**규정**  
**국가(기술)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**

문서번호	TWP-A311	
제정일자	2003. 07. 01.	
개정일자	2015. 04. 27.	
개정번호	3	페이지

**개정이력**

개정 번호	개정일자	개정내용
1	2010. 03. 01.	- 7차 개정
2	2012. 07. 27.	- 연간 변경된 인정 자격증 과목(별지)을 삭제, 간소화
3	2015. 04. 27.	- 학칙 제56조 2에 의거 학과를 전공으로, 학과장은 주임교수로 변경

	규정	문서번호	TWP-A311
		제정일자	2003. 07. 01.
	국가(기술)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3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동원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고자 국가(기술) 자격학점 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12.7.27>

**제2조(학점)** 본 교과목의 학점은 3학점 또는 2학점으로 하며 졸업학점에 포함한다.

**제3조(기재)** 본 교과목의 기재는 성적증명서 하단에 정규학기 이외에 ‘자격증’이라고 표기하고 이수자에 한하여 P급제로 표기한다.

**제4조(자격증 종류 및 인정)** ① 학점 인정 자격증은 전공 및 교과목에 관련된 자격증으로 전공의 신청에 의해 총장의 승인으로 정한다.

②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후 15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이후의 취득한 자격증 및 학점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2.7.27>

③ 한국산업인력공단,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하는 국가(기술)자격증과 민간자격증, 기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전공별 학점 인정 자격증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학점의 이중 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5조(학점 인정 자격증의 신청 및 변경)** ① 국가(기술)자격학점인정 자격증의 신설 등의 사유로 새로이 승인받고자 할 때에는 ‘국가(기술) 학점인정 자격증 승인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<개정 2012.7.27>

② 학점 인정 자격증의 명칭 변경, 폐지 및 기타 사유로 학점 인정 자격증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‘국가(기술) 학점인정 자격증 변경 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할 수 있다.<개정 2012.7.27>

**제6조(학점의 취소)** 자격증의 위조 및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 또는 학점취득이 확인될 경우 졸업 후라도 취득한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	<b>규정</b> <b>국가(기술)자격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</b>	문서번호	TWP-A311
		제정일자	2003. 07. 01.
		개정일자	2015. 04. 27.
		개정번호	3
		페이지	4/4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